

한국 학생들의 일본국헌법 제9조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 학생들은 일본국헌법 제9조를 어떻게 보는가¹

와세다(早稻田)대학교 교수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穂)

1. “얼굴이 보이는 거리”에서의 설문조사

얼굴이 보이는 거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가능하다면, 작은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는 적다. 그런데, 개인이 “국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내셔널리즘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렇게 되면 차이의 강조와 배외주의로 연결되기 쉽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묘하고 어려운 면도 있다. 양방의 여론이 눈앞의 “사건”이나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어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한류”나 “온사마”로 뜨거웠던 2004년과는 달리 2005년의 한일관계는 암운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 계기는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한 시마네현(島根県)의 조례 제정이었지만, 장년에 걸친 “역사의 숙제”도 그 배경에 있었다. 그 뒤 한일관계는 한동안 안정되었지만, 올해 7월 14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명기되어 다시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디어에서는 “한국신문이 보도하는 『독도전면전쟁』이나 자위대와 한국군이 교전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등장했다². 기사제목은 “공군력 공중급유·조기초계·전자전 뒤떨어진 한국”, “해군력 총톤수·대함미사일·방공 일본과 동등”. 마치 냉전시대로 되돌아간 것과 같은 논조다.

미디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디어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이는 좀처럼 알 수 없다.

이러한 때에 “한국 대학생 100인의 『일본국헌법 제9조』에 대한 의견”을 입수했다. 수천명 단위의 여론조사에 비하면 그 표본 수는 적다. 또한 그 대상이 특정 대학의 학생들뿐이며, 이로부터 전체 한국 학생의 의견이라는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규모 조사를 벌인다 해도 질문을 많이 한다 해도 그 또한 한계는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설문조사는 미디어나 연구기관이 실시한 조사원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여성이 공부하는 틈틈이 캠퍼스를 발로 뛰어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여 직접 들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다. 캠퍼스의 나무그늘이나 벤치에서 또는 학생식당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대 개인의 “얼굴이 보이는 거리에서” 응답을 받은 것이다. 발상과 조사의 감각이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덧붙여 말하면, 이 설문조사는 올해 3월에 이루어졌다. 다케시마를 둘러싼 학습지도요령의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이므로 한일관계나 헌법문제에 대해 비교적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점도 이 설문조사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학생 의견의 특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국헌법 9조의 인지도는 40퍼센트 초반 정도에 이른다. 이를 많다고 할까, 적다고 할까? 나는 다른 나라 헌법의, 그것도 특정 조문에 대해서 이 정도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적은 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9조”라는 것이 헌법 법전의 한 조문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대외정책 또는 자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은 있다. 이 설문조사의 특징은 헌법9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읽게 한 뒤에 그 감상을 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처음으로 읽은 헌법9조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이 어떤 감상을 가졌을까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구체적인 감상이나 의견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되겠지만, 내 나름대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 의견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역시 “과거”와 관련된 응답이 많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의지”(18)이나 “패전국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제한”(29)이라는 지적에서부터 “큰 전쟁을 일으킨 전과”(51), “일본은 전범국가”(97)라는 엄격한 단정까지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과거”와의 관계에서 헌법9조를 인식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위해 (9조는) 유지되어야 한다”(86)라는 생각은 일반 사람들도 강하다. 그렇다면 “반성한다면 교전권을 인정해도 좋다”(14)라는 것일까. 이 점에서 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헌법9조의 의의를 파악하고 있는 의견이 주목된다(19, 21, 26, 88, 99등). “과거”의 속죄나 청산을 확실하게 한다면, 9조를 개정하여 “보통의 군대”로 가는 길을 걸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

둘째, 국가는 당연히 군대를 보유한다 라는 “국방”관과의 관계이다(9, 56, 62, 68, 71, 96). 어떤 나라에서 의견을 들어도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의 부인을 정한 일본국헌법 9조 2항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한국에는 징병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9조에 대한 위화감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군대의 존재는 당연히 보면서도 목적을 “국방”에 한정하는 등의 제동을 거는 의견도 눈에 띈다(7, 35, 65, 68, 99 등). 이는 이른바 “전수방위” 정도의 자위대는 인정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일 것이다. 최신에 F22 랩터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71) 등, 구체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의견도 있다.

헌법의 “규범”과 “현실”이 괴리된 상태에 대해서 물을 때 보통 “규범”을 고쳐 “현실”에 맞추는 쪽이 좋다는 논의로 흘러가기가 쉽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무라세(村瀬) 씨에 따르면 “모순적”과 같이 “~적”을 붙이는 것이 최근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9조 2항과 “모순적”인 자위대의 존재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개헌이라면 찬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59, 67, 83등). 그런데, 이 의견이 다수가 아닌 것은 “과거”에 의한 제약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김대중 정권 이래의 “햇볕정책”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둘러싼 미국과의 미묘한 알력 등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설문조사에서는 무력을 쓰지 않는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헌법9조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꽤 있었다(50, 53, 63, 84, 100 등). 이는 신선했다.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 유형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언급한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아 헌법9조에 대한 시선도 변화한 것일까. 군축을 이야기하는 각국이 “평화헌법과 유사한 이념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84)는 의견도 있었다.

3. “과거”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나는 몇 차례 한국에서 일본의 헌법문제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강연을 해 왔다. 2004년 6월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였다. 주최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주제는 전자의 경우 “일본의 『유사법제』와 평화헌법”, 후자가 “일본의 시민사회와 평화헌법”이었다.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설명한 뒤에 최근 몇 년간의 개헌을 둘러싼 문제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질의응답 가운데는 역시 “일본의 과거의 극복이 불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상자위대는 한국 해군을 단시간에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군대가 아닌가”, “헌법이 정말 개정되는가” 등의 질문도 계속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교수 한 분이 “일본국헌법 9조는 전후 일본을 구속하는 국제조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일본 국민에게 헌법9조를 바꿀 자격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특히 인상에 남는다.

2005년 5월에는 한국공법학회(회장 양건 한양대학교 교수)에서 발표를 하였다. 총회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과 공법의 전환”였으며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일본의 헌법개정 동향”이었다.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받은 질문(“9조=국제조약”론)에 대한 답변의 의미를 담아 9조 개정의 “역사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다³. 헌법96조의 개정요건을 보면 다른 나라 국민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지만, 9조 개정에 관여하는 국민은 과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적 사정에 입각하여 결단할 것이 요구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읽고 더욱 강해졌다.

또한, 2002년 10월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의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한국 국방대학교(일본의 방위연구소에 해당한다)를 방문했다. 그 때 육군중장인 총장을 비롯하여 현역 대령급의 교수들과 안전보장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측은 “북의 위협”에 대해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지나치게 위협을 선동하여 『위협』의 일상화』가 일어났었다”고 말하였고, “50년 동안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위협은 있지만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한다”라며 잘라 말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 한국의 『국방백서』를 작성할 때에도 “주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시 되었는데, 결국 2001년도판 『국방백서』부터는 “북한=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⁴. 더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솔직한 지적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헌법9조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엇보인 것과는 같다. 이러한 의견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대단히 미묘한 단계에 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높아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프로젝트로 주한미군 육군의 주력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동두천시) 주변을 찾았을 때, 우연히 “윤금이 사건”(1992년, 미군 병사에 의한 여성 살해사건) 10주년 집회와 조우했다. 이 사건에서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제1차 재판권의 포기를 요구했다. 미국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한국측으로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 일미지위협정에 대해서 오로지 운용으로 헤쳐 나가려고만 하는 일본정부와는 대조적이다. 그러한 가운데 2004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나는 앞서 언급한 서울대학교의 강연 뒤에 『한겨레신문』 지면을 빌어 한국의 NGO “평화네트워크”의 대표 정욱식 씨와 대담을 가졌다⁵. 이 대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단계 평가, 나아가 한미일 안전보장 삼각동맹의 문제도 화제가 되었다. 정욱식 대표는 세계 차원에서의 미군재편(트랜스 포메이션)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르는 “안전보장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보수파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주한미군 전투원 수천 명의 일시적인 부재 또는 영구적인 철수가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 커다란 빈틈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하였다. 『한겨레신문』도 “안전보장은 양방향의 이념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남북조선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감소된다면, 이는 단연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간의 군사회담 등을 통하여 군사적 긴장을 줄여 나가는 걸음을 서둘러야 한다”고 쓰고 있다⁶.

일본에서는 일미안전보장체제와 오키나와의 기지문제에 대하여 “대포동의 위협” 등을 꺼내기만 하면 간단히 사고가 정지되고 마는 경향이 있다.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안전보장의 틀 안에서 폭넓게 문제를 파악해 가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⁷.

이번 한국학생들의 설문조사가 전적으로 일본국헌법 9조와 자위대의 관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미안보조약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논점으로는 파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았다.

4. 마무리에 대신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도쿄의 시민헌법학습회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분이다. 가족의 직장관계로 서울에 살게 되어 한국의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이 의문을 가진 것, 혼란스러웠던 것 등에 대해 발언해 왔다. 그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분의 특징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소중히 여겨 그로부터 헌법문제로 연결시켜 나가려 한다는 점에 있다. 이른바 “걸으며 고민하며 헌법을 생각한다”는 것의 실천이며 이 설문조사도 그 속에서 태어난 결실이다.

일본의 시민은, 특히 본지의 독자 여러분들은 한국학생들의 의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¹ 이 논문은 「法学セミナー(法学세미나)」 2008년 11월호(日本評論社)에 실린 것입니다. 「法学セミナー(法学세미나)」 편집부와 미즈시마(水島) 교수의 양해를 얻어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설문조사의 응답 번호가 있습니다만 「法学セミナー(法学세미나)」 2008년 11월호에는 한국학생 100인의 설문조사 결과도 실려 있습니다.(法学館憲法研究所 事務局)

² 『産経新聞』, 2008년 8월 6일치.

³ 水島朝穂 저, 『憲法「私」論』(小学館, 2006년), 201-202쪽.

⁴ 憲法再生포럼 편, 『有事法制批判』(岩波新書, 2003년), 203쪽(水島집필).

⁵ 『한겨레신문』, 2004년 6월 14일치

(일본어 번역은 <http://www.asaho.com/jpn/bkno/2004/hani20040614.html>).

⁶ 『한겨레신문』, 2004년 6월 9일치 사실.

⁷ 水島, 「地域的安全保障と日本国憲法」, 法律時報 2003년 6월호, 33-36쪽. 또한, 좌담회 「北東アジアの立憲主義と平和主義」(李衛東, 徐勝, 豊下楯彦, 水島朝穂), 같은 책, 17-22쪽 참조.